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김성환 (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하천구역에 대한 손실보상업무등의 위임·위탁수수료 요율은 고정수수료가 없어 구간별 수수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과 요율이 달라 동일한 하천보상업무에 대해 수탁기관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불합리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○○○○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. . ~ 2026.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0조제2항 중 “별표 4와 같다”를 “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다”로 한다.

별표 4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0조(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) ① 법 제82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 1.~ 5. (생략) ②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<u>별표 4와 같다.</u>	제90조(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 1.~ 5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「<u>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</u>」 <u>별표 1에 따른다.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계획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702